

 신안산대학교	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	규정번호 4-1-37 제정일자 2017.04.19 개정일자 2021.08.20 책임부서/팀·계 기획처
---	---------------------	---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 내에 설치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제2조(적용범위)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, 법인정관, 학칙 및 기타 다른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설치 및 규정) ①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설치 사유, 기능, 구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각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제규정 관리규정에서 정한 규정 제정 절차에 따라 규정을 제정한 후 규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.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당연직 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부서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위원장이 이를 임명한다.

제5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 특별한 경우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임기는 조정될 수 있다.

② 각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 재임기간을 임기로 한다.

③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6조(소집과 의결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단, 각 위원회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각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.

제7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 하출석위원 전원이 서명, 날인하여야 한다.

제8조(재정) ① 총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(위원장 제외)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기별 1회에 한하여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해산) ① 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자연 해산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0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